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4월 20일, 김종민의원·강준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4.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종민의원·강준현의원)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
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직선거 특례를 두어, 같은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하여는 같은 법과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선거 및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역구시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과 별도로 같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18명이며(제19조제2항),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단수는 1로 보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그 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는 지역구시의원 18명과 비례대표시의원 2명으로 구성됨.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전국 총인구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2021년 약 37만명에서 2025년 약 39만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기존 의원정수로는 증가하는 주민 수를 충분히 대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전국 및 세종시 총인구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종시인구수	371,895	383,591	386,525	390,685	391,965
전국 인구수	51,638,809	51,439,038	51,325,329	51,217,221	51,117,378

자료: 행정구역별 인구통계(KOSIS)

한편,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의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의원정수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상향하여, 이미 비율이 상향된 다른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비례대표 확대 취지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구현하려는 것임. 이 경우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증가된 의원정수를 바탕으로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의 조제목을 “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개정규정을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는 등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의원 정수를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상향할 경우, 지역구시의원 18명 기준 비례대표시의원은 3명이 되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비례대표시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하게 되어 전체 의원정수 또한 20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상향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의 조제목을 “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개정규정을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생략)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u>100분의 10</u> 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 ----- ----- ----- ----- ----- ----- <u>100분의 14</u> 로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④ ~ ⑦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의원 정수 변경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	제2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시의

	<u>터 적용한다.</u>	<u>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u>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14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생 략)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 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 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 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u>100분</u> <u>의 10으로</u> 한다. 이 경우 단수 는 1로 본다.	③ ----- ----- ----- ----- <u>100분</u> <u>의 14로</u>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